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8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제68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3월 종료 되고, 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 26년 광역 10개(인천, 부산, 광중 등), 기초 34개(서산, 군산, 경주 등) 참여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자, 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시범사업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업무 대행을 하였으며, 계약 만료 기간 도래하여 위탁 기관을 재선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추진계획

- 위탁사무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 위탁예산 : 금324,000천원(국 50%, 도 15%, 시 35%)

(인건비) 자립지원 인력(5명)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회의비, 여비 등

(사업비) 주거환경개선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보조기기 구매 지원, 건강검진비

- 위탁기간 : 2027. 4. 1 ~ 2030. 3. 31.(3년)
- 선정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사무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고,「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위탁사무내용

- 장애인의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 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상황 평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과 정보제공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지원 정보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Ⅲ. 검토의견

1. 제안목적

○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서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의안의 위탁사무 내용에서도 위 법률에서 규정한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일치하고 있고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민간 위탁 사무의 적정성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시장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고
- 같은법 제5조에서는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상담, 사례관리,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 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1항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함
- 같은법 제18조(위탁기간) 1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성과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과 3년의 위탁기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고자료 1: 서산시 시범사업 성과 평가 결과 (2024년)】

평가 등급	점수					총점	100점 환산
	시범사업 운영	시범사업 성과	서비스제공 기간 운영	지자체 노력	가산점		
B(우수)	42	20	10	11	6	89	77.4

【참고자료 2: 서산시 시범사업 성과 평가 결과 (2025년)】

평가 등급	점수					총점	100점 환산
	시범사업 운영	시범사업 성과	서비스제공 기간 운영	지자체 노력	가산점		
B(우수)	50	25	10	4	7	96	87.27

Ⅲ. 종합검토

가.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자립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주거 전환 지원, 지역사회 정착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또한 같은법에서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함

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상담, 사례관리,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마.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바. 2024년,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음 【참고자료 1,2】

사.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위탁 이후에도 장애인의 자립 유지 여부와 서비스 연계 실적, 당사자 만족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